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셀프만으로 살 수 없는 우리사회

이중구속(double-bind)이 난무하고 있다. 일상화 됐다고도 볼 수 있다. '이중구속'은 빚을 뜻하는가. 한 사람이 둘 이상의 모순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빼도 박도 못한 상태인 것이다.

이 개념은 1966년 그레고리 베이트슨이 제시했다. 인류학자이자 언어학자다. 1956년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연구소에서 조현병 환자 가족의 의사소통을 지도하면서 이중구속이 '조현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참으로 무서운 대화법이다.

날마다 사회를 시궁창으로 만들어가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이중구속의 원흉들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가정이나 사회 역사 마찬가지다.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상호 모순

되는 메시지를 보내면 자녀들은 어리둥절 한다. 찢찢댄다. 계속 반복되어 받게 되면 결국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직장에서도 그렇다. 회사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인 제안을 많이 하라고 한다. 그러나 정작 제안을 하면 거들떠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다. 회의 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든지 하라고 해서 하게 되면 귀에 거슬리는 이야기의 경우에는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수가 다반사다. 이러니 누구든지 본심을 숨길 수밖에 없겠는가. 제안을 안 하면 안한다고 난리다. 이러니 현대인들은 눈치만 발달할 수밖에. 때문에 순진무구한 인간다운 사람들은 멍청이로 전락돼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중구속은 어렸을 때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 손님들이 와 있을 때 아이가 "엄마, 나 친구와 같이 놀

고 와도 돼? 아직 숙제는 못했어." 이때 엄마는 "으...응 놀다 와." 손님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만 표정은 화가 난 얼굴로 아이를 찌레찌레 본다. 이때 아이는 '놀러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눈치 없는 아이는 놀고 왔다가 엄마에게 타박당하기 십상이다. 어린 아이로서는 이런 상황들이 쉽게 이해될 리 없다.

"거짓말 하지 말라.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에게 듣기 싫은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부모 메시지와 받고 자란 아이가 "이웃 어때?" 하고 엄마가 묻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나이에 맞지 않은 옷을 입으면서 묻는 경우에 말이다.

이러니 나날이 눈치만 보는 왜소한 인간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겠는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학습되어

가는 것이다. 아이가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다면 자신이 잘못된 것 같기도 해서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자신감 역시 떨어진다. 그러면 서 눈치만 발달하게 된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다. 밤늦은 시간 잠자리에서 낮에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수다 떨다가 남편에게 "괜찮아? 계속 이야기해도 돼?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하고 물을 때, 피곤한 모습의 남편은(시계를 보면서) "괜찮아. 계속해". 솔직하지 못한 이런 대화가 지속될 때 이 부부의 행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결국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에서 페르소나(Persona)가 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페르소나를 자신의 본성과 동일시 해서 안 된다는 것이다. 만약 동일시하면 자신의 본 모습(Seif)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신체적·정신적 문제들이 생겨 열등감이나 갖가지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의 본 모습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로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페르소나가 판치는 세상에서 셀프만으로 살 수도 없다. 이미 우리사회가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때문에 셀프와 페르소나 간의 줄타기를 잘해서 둘 사이의 밸런스를 잘 잡아보면 어떨까.

社說

응급의료헬기 운용 폭 넓혀야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장이 아닌 고속도로나 운동장 등에서도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한 정부기관 간 상호 협조 체계 규정이 마련됐더니 다행스럽게 여긴다.

보건복지부·국방부·경찰청·소방청·산림청·해양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공동운영 규정'을 최근 제정한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14년 3월에도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 부처 헬기를 효율적 활용하기 위해 '범부처 헬기 공동활용체계 운영 지침'을 제정한 바 있으나 규범적 근거가 없어 현장에 정착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공동운영 규정 제정 부처 내 규율성을 지닌 행정규칙인 총리훈령으로 제정, 단순 상황공유뿐만 아니라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하고 협조 의무를 부여하는 등 내용을 대폭 보완했다.

소방청 소관 3469개와 복지부 소관 828개 등 각 정부기관이 보

유한 이착륙장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한편 이착륙장 중심 운용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상호 협조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3차선 이상 고속도로 사고로 중증이상환자가 발생한 경우 미리 고속도로 순찰대 등이 주변 교통을 통제해 헬기가 고속도로에 바로 착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운동장 등에선 헬기 착륙 시 흙먼지가 발생해 응급환자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소방펌프차나 지방자치단체 살수차가 미리 물을 뿌려 먼지를 최소화한다.

범부처 응급의료헬기 컨트롤 타워는 119종합상황실이 맡는다.

정부는 이번 공동운영 규정 제정을 계기로 응급환자 이송이 가능한 정부부처 126대 헬기(복지부 6대, 국방부 의무헬기 7대, 경찰청 18대, 소방청 30대, 산림청 47대, 해양경찰청 18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 취약지 중증응급환자를 더 신속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놀이 준비운동 · 안전장비 착용 습관화 해야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피서철이 시작되고 많은 피서객들은 더위를 피해 강과 바다나 시원한 물이 흐른 계곡을 찾을 것이다.

아름다운 강과 바다는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들의 안전감각증과 부주의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하고, 수심이 확인되지 않는 곳에서는 절대 수영을 금지하며, 시원한 즐거움을 만끽하기 위해 수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가족, 동호회, 그룹 및 친구들이 함께 수영을 하여야 한다.

음주후, 식사직후, 심한 운동, 중노동 후 후에는 강이나 바다에 들어갈 때 심장마비를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물놀이를 피하

고, 특히 어린이가 물놀이를 할 때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보호아래 물놀이를 해야 할 것이며, 수영 또는 보트놀이를 할 때는 구명동의(Life Jacket)를 착용하고, 구명대원이 있는 곳에서만 수영을 한다.

특히 뜨거운 햇볕을 많이 받으면 화상·기미 및 피부파괴 등 일사병과 열사병·피부암 등에 걸릴 우려가 많아 적당한(1시간 정도) 피부 노출과 아름다운 선크림(Suntan)을 했으면 한다.

해변에서는 119구급대원이나 해양구조대원의 지시에 따르고, 물장난으로 위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한층 더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바람과 파도, 조류, 물결, 물살의 상태를 항상 파악하고, 멀리 수영을 할 때에는 돌아올 때와 장소와 조류 및 날씨를 고려하며, 조류에 떠내려

갈 때에는 같은 방향 사선으로 비껴 나온다.

혹시, 수난사고 발생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현장조치를 한다. 첫 번째, 구명보트(Life Boat), 구명부표(Life Ring), 구명부표(Life Buoy), 구명로프(Life Rope) 등을 던져서 익수자를 구조한다.

두 번째, 현장 주위에 있는 막대기, 판자, 빈 연료통, 가방, 플라스틱 병, 또는 물건 및 시설물을 이용하여 신속하고 침착하게 익수자를 구조한다.

세 번째, 여러 사람의 손과 손을 연결해서 익수자를 구조한다.

네 번째, 위기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숙달된 구급대원이 익수자를 구조한다.

숙달된 구급대원이나 수영할 수 있는 구조자라는 실력은 양호한 형

태로얇은 다이빙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쉬지 않고 약 50m를 수영할 수 있어야 하며, 1분 동안 수직으로 떠있기도 하고, 제자리에서 헤엄도 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다리만을 사용하여 누워서 쉽게 수영할 수 있어야 하며, 수직잠입(Surface Dive)도 할 수 있어야 하고, 물 밑에서도 짧은 거리는 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 익수자를 구조한 후에 119구조·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현장관계자들은 환자를 평평하고 안정된 곳으로 옮기고, 의식이 있는가, 호흡이 정지되었는가, 맥박이 뛰는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한다.

가능한 사고현장에서 응급처치를 신속하게 실시하며, 응급처치 후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해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백종희 / 무안소방서 안전센터장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 ▲ 수도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신고 123
- ▲ 가스사고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가 0001 (21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3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